

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-110호

「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(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-00호)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3월 14일
중 소 기 업 청 장

「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」 고시 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- 성능인증제품 규격추가에 대한 내부지침은 있으나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관련 조항 신설 필요
 - 성능인증제품 규격추가 신청대상, 심사절차, 유효기간 등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
-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,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(공포 '13.8.6, 시행 '14.8.7)
 - 시행세칙 [별지 제11호서식]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

2. 관련근거

-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, 제19조, 제20조

3. 주요내용

- 가. 성능인증제품 규격추가 조항 신설
- 나.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

4. 입법예고(공고) 기간 : 공고일로부터 20일

5. 공고방법 : 중소기업청 홈페이지(<http://www.smba.go.kr>)에 공고